

감 사 보 고 서

자체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

- ◆◆◆콘서트, ○○○라운지클럽, ○○○라운지콘서트 -

2024.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3
III. 감사결과	9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1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기관의 미션달성을 위한 신규 자체사업 추진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높아짐
- 예술가의집 기획사업(◆◆◆콘서트, ○○○라운지클럽, ○○○라운지 콘서트 등) 추진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발생 예방 및 제도적 개선·보완책 마련

2. 감사 중점사항

- 소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감독되는 기획사업의 내부통제를 점검함으로써 잠재위험 진단·식별 및 해결방안 모색
 - 사업 관련 예산과목을 고려한 집행의 적정성
 - 사업참여 협력기관 등에 대한 투명한 평가·관리
 -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절차적 불합리성 점검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1명) : ※※※ 과장
- 감사기간
 - ' 24.05.20.(월) ~ 05.24.(금) : 예비조사
 - ' 24.05.27.(월) ~ 05.31.(금) : 실지감사 / 5일간
 - ' 24.06.03.(월) ~ 07.30.(화) :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요구서 발송

4.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센터 / ○○○○양성팀
- 감사범위 : ' 20년 ~ 현재까지 예술가의집 기획사업
 - 예술가의집 기획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및 실태
 -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
 - ※ <◆◆◆콘서트> 사업의 경우 ' 14년 개시 시점부터 사업추진·운영의 변모과정 조망

5.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최종 확정
 - ' 24.7.22.(월) 지적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수렴
 - ' 24.7.24.(수) 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부서 의견 청취
 - ' 24.7.30.(화) 감사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점검결과 최종 확정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1. 예술가의집 공간 구성 현황(' 24년 현재)

[표1] 예술가의집 시설 개요

구분	공간 구성	활용면적	활용현황
1층 (589.09㎡)	운영실(행정실)	197.1㎡ (60평)	○○○○양성팀 사무실, 전산실, 사무처장/감사실
	이나라도움안내센터	34.1㎡ (10.3평)	이나라도움센터 사무실
	◎◎◎영아티스트랩	148.3㎡ (45평)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공간
	스마트워크실	46.3㎡ (14평)	출장 회의 등 사무행정 공간
	예술가의집 물품보관실	62㎡ (19평)	출장 직원 물품보관실, 예술가의집 자체 물품보관실
	ncas 운영지원팀	13㎡ (4평)	ncas 운영 지원 사무실
	휴게공간 및 경비 숙직실	12.3㎡ (3.7평)	용역직원 휴게공간 및 경비 숙직실
	화장실, 복도	75.99㎡ (23평)	화장실 및 복도
2층 (620.50㎡)	예술가의집 라운지	312.3㎡ (94.5평)	예술나무 후원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카페
	예술가의집 운영사무실	25.4㎡ (8평)	예술가의집 서비스 운영 사무실
	영상회의실	63.7㎡ (19.3평)	위원회 영상회의 등 행정 공간 운영
	사무실	58.7㎡ (18평)	사무행정 공간
	화장실, 복도, 계단	160.4㎡ (49평)	화장실 및 복도, 계단
3층 (410.58㎡)	세미나실 1실	43.23㎡ (13.1평)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연구, 발표, 회의, 연습 등 대관 공간 활용 (다목적홀 통역실 포함)
	세미나실 2실	45.87㎡ (14평)	
	세미나실 3실	32.34㎡ (10평)	
	다목적홀	188.7㎡ (57.1평)	
	홍보 담당 사무실	20㎡ (6.1평)	☆☆☆☆·☆☆센터 홍보팀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80.44㎡ (24.4평)	화장실 및 복도, 계단
소계	-	1,634.71㎡ (492.5평)	옥탑층 7.93㎡ 및 최고층 옥상공간 6.61㎡ 포함
(기타)	맞이공원 (뒤뜰)	478㎡ (144.6평)	야외행사, 휴식 등

2. 예술가의집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이력('20년~현재)

□ 예술가의집 운영 추진방향, 주요 프로그램 및 소관부서 변화 추이

[표2] 예술가의집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이력

구분	기획 프로그램	대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나무 운동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거점 역할 - 후원활성화 사업과 모금이 함께 이루어지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소적 역할 ○ 주요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나무 연계) ◇◇◇콘서트 - (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건축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매개활동과 예술매개자들을 위한 공간 운영 ○ 심의위원회에서 대관 승인
'21년 ~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나무 운동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거점 역할 - 예술애호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가치 발현 ○ 주요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나무 연계) ◇◇◇콘서트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나무 운동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거점 역할 - 예술애호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가치 발현 ○ 주요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나무 연계) ◇◇◇콘서트 - (예술가-시민 소통 프로그램) ◎◎◎라운지클럽 - (청년예술인지원사업 연계) ◎◎◎라운지마켓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가를 위한 성장형 프로그램 마련 - 예술애호가 및 예술가와 시민 간 네트워크 장 마련 ○ 주요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연계) ◎◎◎라운지클럽 - (청년예술가사업 연계) ◎◎◎라운지콘서트 	
비고	※ ('20년~'22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침에 따라 대면행사에서 일부 온라인 행사로 전환	※ ('20년~'22년)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대관 제외 기간에 내부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대관 공간으로서 활용

[표3] 예술가의집 기획프로그램 관련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부서별 분장 업무 변화

구분	○○○○양성팀 (舊 ●●●●양성부)	☆☆☆☆·☆☆센터 (舊 ★★★★★★센터)
'20. 1. 1. ~ '23. 3.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의집 프로그램 기획 및 시설·운영 ○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후원 활성화 사업
'23. 3. 27. ~ '24.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의집 대관 및 주차·부대시설 관리 ○ 청년 예술가의 창작·연구 지원 등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후원 활성화 사업
'24. 2. 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의집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청년 예술가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에 관한 업무 - 후원 활성화 캠페인 운영

※ '23.3.27. 조직개편으로 예술가의집 운영 업무 담당부서가 '●●●●양성부'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 담당부서인 '★★★★★센터'는 <◇◇◇콘서트> 프로그램이 예술후원 활성화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점을 고려, '★★★★★센터'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겠다고 '●●●●양성부'에 통보) 함

1) ★★★★★★센터-001361(2023.04.11.) "예술가의집 기획프로그램 주관 부서 변경 보고"

3. 예술가의집 주요 기획 프로그램별 개요

(1) ◆◆◆콘서트

□ 프로그램 개요

- 공동기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공연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운영목적
 - 예술가의집 공간정체성에 근거하여 대학로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대 및 매일 예술이 있는 삶 실현

□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배경

- <◆◆◆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추진·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예술위와 ‘♡♡♡♡♡♡♡’의 협업방식 및 추진배경 등을 고려, 편의상 [표4]과 같이 ‘기획대관형’, ‘집중기획형’, ‘행사유치형’으로 분류하여 점검 함

[표4 <◆◆◆콘서트> 프로그램 유형별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기획대관형	“♡♡♡♡♡♡♡” 주관 클래식 음악 공연 * 통상 월요일 저녁 8시 예술가의집에서 진행	○ (' 14년 시작) 예술가의집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추진 ○ (' 20년 이후) 예술나무운동 ²⁾ 연계 추진 - 예술나무 캠페인 등에 활용
집중기획형	기획대관형 프로그램의 일부 회차에 대하여 공연내용을 예술위와 “♡♡♡♡♡♡♡”가 협의 - 예술위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용 - 예술위가 “♡♡♡♡♡♡♡”에 사업비 일부 지원 (MOU체결)	○ (' 16년 시작) 예술가의집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추진 ○ (' 20년 이후) 예술나무운동 연계 추진 - 예술나무 캠페인 및 예술나무 후원자 예우 프로그램 등에 활용
행사유치형	“♡♡♡♡♡♡♡”가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음악축제(줄라이페스티벌 ³⁾) 예술가의집 유치 - 예술위가 장소 대관 등을 후원	○ (' 20년 시작)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 예술가의집 대관 비수기 등 고려

* 공통사항⁴⁾ : 예술위는 “♡♡♡♡♡♡♡” 측에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등 무료대관 및 기자제 제공

2) 예술위 대표 후원 브랜드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후원 문화 확산을 추진함

3) “♡♡♡♡♡♡♡”가 기획하는 여름 축제로, 매해 작곡가를 선정하여 7월 한달간 매일 새로운 연주가 이어지는 클래식음악 축제

4) 소관부서에서 매년 수립하는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계획’ 및 ‘공동기획프로그램 ◆◆◆콘서트 운영계획’ 등에 근거함

□ 추진실적 (' 20년~ ' 23년)

○ <<◆◆◆콘서트> 사업 연간 주요 운영실적은 [표5]과 같음

[표5] (' 20년~ ' 23년) <◆◆◆콘서트> 연간 주요실적

연도	운영 횟수	총 관객 수	참여 예술가 수	생중계관람뷰수
' 20	58회	2,644명 (회당 평균 45.6명)	277명	100,782명
' 21	69회	3,171명 (회당 평균45.9명)	360명	183,402명
' 22	52회	2,877명 (회당 평균55.3명)	340명	171,990명
' 23	68회	5,095명 (회당 평균 74.9명)	379명	398,460명

○ <<◆◆◆콘서트> ‘집중기획형’ 추진 관련, 예술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 에 [표6]과 같이 제작비 일부를 지원함

[표6] (' 20년~ ' 23년) <◆◆◆콘서트> ‘집중기획형’ 운영 및 제작비 일부 지급내역

연도	운영 횟수	내용	지원내역(원)
' 20	10회	○ 시리즈 기획을 통한 신규 관객층 확대 - 신진 & 중견 음악가 시리즈(6회) - 아티스트 시리즈 (4회)	30,000,000
' 21	10회	○ 실연자 연주기획 중심의 무관중 생중계 공연 - 클래식 공연 (6회) - 현대무용 & 즉흥연주 (4회)	30,000,000
' 22	8회 ⁵⁾	○ 후원활성화 공간으로서 이미지 제고 - 신진음악가 발굴(5회) - 실험무대(2회) - 예술나무 후원자 예우공연(1회)	24,000,000
' 23	10회	○ 후원활성화 공간으로서 이미지 제고 - 신진음악가 발굴(6회) - 실험무대(2회) - 예술나무 후원자 예우공연(2회)	29,500,000

[예산과목]

- (' 20년) 예술의진흥및향유기회확대/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예술가의집(일반수용비)
- (' 21년~ ' 23년) 예술의창작역량및사회적가치제고/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예술가의집운영(일반수용비)

5) 당초 10회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하반기 예술가의집 공사관계로 횟수를 8회로 축소하여 진행 함

(2) ○○○라운지클럽

□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 개요

- 운영장소 :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 운영방법 : 연사와 함께하는 대담형 강의
- 운영형태 : 멤버십 형태의 지식라운지 + 네트워킹 프로그램(체험)

[표7] ('23년~'24년) ○○○라운지클럽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 개요

구분	'23년	'24년
주관부서	○○○○양성팀 (舊 ●●●●양성부)	☆☆☆☆·☆☆센터 (舊 ★★★★★센터)
추진 배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지 활용) 예술가의집 개보수를 통한 신규 공간 활용 방안 모색 ○ (매개형 공간)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지 활용) 예술가의집 개보수를 통한 신규 공간 활용 방안 모색 ○ (매개형 공간)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 역할 강화 ○ (잠재 후원자 발굴) 예술가와의 대담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 인식을 통한 잠재 후원자 발굴
운영시간	○ '23. 8. 30. ~ 11. 29. (격주 수요일 / 8회)	○ '24. 4. 9. ~ 6. 25. (매주 화요일 / 8회)
참여인원	○ 회차별 30명 ⁶⁾ 내외	○ 40명
멤버십 회비	○ 100,000원	○ 100,000원
멤버십 혜택 (문화예술후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 예술가의집 라운지 이용권 10매 ○ 예술가의집 주차 이용권 5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 예술가의집 라운지 이용권 10매 ○ 예술가의집 주차 이용권 5매
집행예산 (예산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 46,885,001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① : 31,613,001원⁷⁾ - 일반수용비② : 14,672,000원 - 업무추진비 : 600,000원 · 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비대면예술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 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인력육성/차세대예술인력육성/무대예술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 50,59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용비 : 49,991,000원 - 업무추진비 : 600,000원 · 예술향유기확대/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문화예술기부활성화/예술나무운동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회비 : 4,080,000원 ○ 만족도 : 4.66점 / 5점 	('24. 5월 현재 진행중)

6) '23년 멤버십 회원 참여를 저조를 예방하기 위해 ONE DAY(1일권/20,000원) 운영, '24년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폐지

7) '23년 <○○○문화예술전문가코스 현장 교육 운영> 용역사업에서 '청년문화예술학교' 명목으로 연사 사례비, 교육 진행비 등 집행, 산식 : (청년문화예술학교) (24,647,592원 + 일반관리비(6%) + 이윤(10%)) x 부가세(10%),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은 특정할 수 없어 제외

(3) ○○○라운지콘서트

□ 추진배경

- 예술가의집 라운지 활성화 및 청년예술가 간접 지원

□ 프로그램 개요

- 주관부서 : ○○○○양성팀
- 명 칭 : 시즌1. ○○○ 영아티스트⁸⁾와 함께하는 라운지콘서트
- 운영장소 :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내
- 운영시간 : ' 24.3월 ~ 6월 2·4주 금요일 12:00 ~ 13:10 (총 8회)
※ 실제 연주시간 12:30 ~ 13:10
- 연주자 : 음악분야 청년 예술가(39세 이하)
 - 청년지원사업 3개년 음악 분야 참여자 중 희망자
 - 예술요원 출신 피아니스트, 직접 발굴 등
- 관객 : 라운지 이용 고객
- 운영방법 : 연주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 방식 결정
 - 연주 전 혹은 후 본인 PR 인터뷰 촬영
 - 연주자 성향에 따라 연주 중 스몰토크 진행 등 유동적으로 운영
- 집행예산 : 11,500,000원
 - 일반수용비 : 11,000,000원
 - 사업추진비 : 500,000원
 - 예산과목 : 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예술가의집운영

8) ○○○ 영아티스트 : 청년예술가지원사업 참여자를 칭하는 말

Ⅲ. 감사결과

1. 총평

- 최근 기관의 자체·기획사업 추진의지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감사실은 기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지는 공모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자체사업의 내부통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잠재된 위험 진단·식별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에 기관의 운영시설인 예술가의집에서 추진·운영하고 있는 기획사업 (◆◆◆콘서트, ○○○라운지클럽, ○○○라운지콘서트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센터, ○○○○양성팀을 대상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의 관련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설정

 -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사례가 확인 됨
 - [◆◆◆콘서트] '20년 ~ '23년 사업 추진·운영 불합리
 - [◆◆◆콘서트] '24년 사업추진 근거 부존재
 - [○○○라운지클럽] '23년 예산편성 및 집행 불합리
 - [○○○라운지클럽] '24년 사업 추진·운영 비합리
- ※ 당초, 감사대상이었던 '○○○라운지콘서트' 사업은 '24년 신설사업으로서 예비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한정된 감사자원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이번 점검에서 제외함

- 위와 같은 행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소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하는 자체사업이 사업목표, 집행과정 및 결과를 적정성·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이 생략된 채 소관부서로 업무가 부여 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아 자체사업에 대한 행정적 불합리, 사업성과의 비합리 등이 상존함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관행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함

- 그러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관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총건수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6	-	-	-	-	-	-	-	-	-	3	1	2	-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제 목(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분요구사항	조치부서
1	[◆◆◆콘서트] '20년 ~ '23년 사업 추진·운영 불합리	통보	후원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정행위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 · ☆☆센터
		개선요구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 및 내용, 체결 절차, 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불비한 규정을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	◆◆◆◆팀
2	[◆◆◆콘서트] '24년 사업추진 근거 부존재	권고	“'24년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누락되어 있는 '24년 <◆◆◆콘서트>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 등을 마련	○○○○ 양성팀
		개선요구	특정업무에 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기관의 업무 효율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직제관리 주관부서가 조정하도록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팀
3	[○○○라운지클럽] '23년 예산편성 및 집행 불합리	통보	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시에 지도·점검·통제하는 방안 마련	◆◆◆◆팀
4	[○○○라운지클럽] '24년 사업 추진·운영 비합리	개선요구	<○○○라운지클럽> 사업 추진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을 적절하게 수립함으로써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고, 모더레이터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 및 재설정하여 그에 맞는 사업체계 또는 고용형태 등을 마련	☆☆☆☆ · ☆☆센터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 개 선 요 구

제 목 [◆◆◆콘서트] '20년 ~ '23년 사업 추진·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 ☆☆☆☆·☆☆센터

조 치 부 서 ☆☆☆☆·☆☆센터, ◆◆◆◆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매개형 열린 공간으로 '예술가의집(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소재)'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예술위는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으로 '예술가의집' 운영과 관련한 소관부서를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서는 매년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프로그램 및 대관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가의집 기획프로그램 중 하나인 <◆◆◆콘서트>는 예술위와 '♡♡♡♡♡♡♡(이하 '♡♡♡')'가 공동기획하여 추진되는 클래식 중심의 공연으로서 '14.12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을 주요 거점으로 진행되어 왔다.

★★★★★센터(現 '☆☆☆☆·☆☆센터)는 '20.1.1 조직개편으로 '예술가의집' 운영 소관부서가 되었다.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사업목적과 성과관리의 모순

★★★★★★센터는 '20년 ‘예술가의집 기획프로그램 <◆◆◆콘서트 운영계획’ 을 수립하면서, 사업 목적을 “후원활성화” 로 조정, 예술나무9)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20년부터 '23년까지 ★★★★★★센터가 작성한 <◆◆◆콘서트> 결과보고 등에 담긴 연도별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센터 <◆◆◆콘서트> 연간 주요실적

연도	정량성과		정성성과
'20	운영 횟수	5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예술가의집 임시 휴관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연주자들에게 실연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무관중 생중계’ 로 공연 진행 ○ 불안한 공연상황에서 무관중 생중계를 통해 연주자에게는 실연의 기회 제공, 관람객에게는 무료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두터운 신뢰 구축
	총 관객 수	2,644명 (회당 평균 45.6명)	
	참여 예술가 수	277명	
	생중계관람뷰수	100,782명	
'21	운영 횟수	6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력있는 신진 음악가의 발굴과 실연 기회 지원 ○ <◆◆◆콘서트> 참여 아티스트의 연이은 수상 성과 회신 ○ 초대권 없는 클래식 공연문화 선도 ○ 공연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지속개선 의지표명 및 만족도 제고 ○ 예술가의집 외부 상영회¹⁰⁾로 예술향유 활동의 중요성 인식확산의 계기 마련
	총 관객 수	3,171명 (회당 평균45.9명)	
	참여 예술가 수	360명	
	생중계관람뷰수	183,402명	
'22	운영 횟수	5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관람에 잠식되지 않은 예술 향유의 니즈 확인 ○ 다양한 신진 연주자를 조명, 매주 열리는 실연의 장으로서 클래식계의 신뢰도 제고 ○ 초대권 없는 클래식 공연문화 선도 ○ <◆◆◆콘서트 홍보와 예술나무운동 지원사업의 수혜단체로 협력하여 행사¹¹⁾ 성료
	총 관객 수	2,877명 (회당 평균55.3명)	
	참여 예술가 수	340명	
	생중계관람뷰수	171,990명	
'23	운영 횟수	6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신진 연주자를 조명, 매주 열리는 실연의 장으로서 클래식계의 신뢰도 제고 및 우수한 연주자들의 성장기반 동력이 됨 ○ 정기적인 공연 초대¹²⁾를 통해 예술나무 후원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예우 기획이 가능하게 됨
	총 관객 수	5,095명 (회당 평균 74.9명)	
	참여 예술가 수	379명	
	생중계관람뷰수	398,460명	

※ 결과보고서 내용 발췌, '20년의 경우 결과보고서 부재로 '21년 계획서 등 참고

9) 예술위 대표 후원 브랜드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후원 문화 확산을 추진함

10) <◆◆◆콘서트> 공연을 예술가의집 외부 및 마로니에공원에 실황중계 및 예술나무 홍보영상 상영 ('21.12.6.)

11) 예술나무운동 홍보행사 「FUN FOR ART」에 <◆◆◆콘서트> 관련 실연자 및 기획자 참여 ('22.10.20.)

12) 예술나무 후원자 대상의 예우 프로그램 2회 진행 ('23.6.12., '23.9.4.)

그런데, 주요 정량성과 지표로서 관리되고 있는 ‘운영 횟수’, ‘총 관객 수’, ‘참여 예술가 수’, ‘생중계관람뷰수’ 등은 사업목적인 ‘후원활성화’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물론, 정성성과로서 일부 ‘후원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단발성 또는 부대행사 등에 따른 성과인 점을 고려하면, 연 평균 60회가 넘는 운영 횟수를 감안했을 때 사업 전반에 걸쳐 ‘후원활성화’라는 목적에 맞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14년 <◆◆◆콘서트> 프로그램 최초 추진 당시 추진배경 및 목적을 ‘예술가의집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도 증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운영 및 관리가 진행되어 왔는데, '20년 소관부서가 ★★★★★★★센터로 변경되면서 사업목적에 조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전 사업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함께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표를 차용한 것에서 기인 된 것으로 파악된다.

나. 업무협약서(MOU) 체결 및 재정지원의 절차적 불합리

★★★★★★센터는 예술가의집에서 기획대관형으로 진행되고 있던 <◆◆◆콘서트> 프로그램의 일부 회차(연간 10회)를 예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 ‘사업목적 및 기본원칙’, ‘상호 협력사항’, ‘사업비’, ‘협약 기간 및 효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지급근거로 부서 주요사업인 예술나무운동¹³⁾과 연계한 예술나무캠페인, 예술나무 후원자 예우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사업비를 '♡♡♡'에 지급하는 등 [표2]와 같이 <◆◆◆콘서트(집중기획형)>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년부터 '23년까지의

13) 예술위 대표 후원 브랜드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후원 문화 확산을 추진함

업무협약서를 살펴보면, 예술위는 ♡♡♡에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금¹⁴⁾’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2] <◇◇◇◇콘서트(집중기획형) 운영 및 제작비 일부 지급내역

연도	운영 횟수	내용	사업비 지급내역(원) (예술위 → ♡♡♡)
' 20	10회	○ 시리즈 기획을 통한 신규 관객층 확대 - 신진 & 중견 음악가 시리즈(6회) - 아티스트 시리즈 (4회)	30,000,000
' 21	10회	○ 실연자 연주기회 중심의 무관중 생중계 공연 - 클래식 공연 (6회) - 현대무용 & 즉흥연주 (4회)	30,000,000
' 22	8회 ¹⁵⁾	○ 후원활성화 공간으로서 이미지 제고 - 신진음악가 발굴(5회), 실험무대(2회) - 예술나무 후원자 예우공연(1회)	24,000,000
' 23	10회	○ 후원활성화 공간으로서 이미지 제고 - 신진음악가 발굴(6회), 실험무대(2회) - 예술나무 후원자 예우공연(2회)	29,500,000

[예산과목]

- (' 20년) 예술의진흥및향유기회확대/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예술가의집(일반수용비)
- (' 21년~ ' 23년) 예술의창작역량및사회적가치제고/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예술가의집운영(일반수용비)

① 업무협약서(MOU) 체결 절차 비합리

당시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협약서 체결과 관련한 총괄 관리 주관부서는 ‘◇◇◇◇부(現 ◇◇◇◇팀)’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나 기관의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체결의 대상기관 및 내용, 체결 절차,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지난 ' 20년부터 ' 23년까지 기관의 업무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표3]과 같은 절차¹⁶⁾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었다.

14) 업무협약서 상 “필요한 경우 예술위는 ♡♡♡에게 사업 취소 및 기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

15) 당초 10회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하반기 예술가의집 공사관계로 횟수를 8회로 축소하여 진행 함

16) “◇◇◇◇부-2028(2016.03.24.) 대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방침 현행화 및 시행 알림” 협조문에 근거

[표3] 예술위 대외협력 업무협약 체결 흐름도

절 차	행위주체	업 무 내 용	비 고
1단계	소관부서	(해당부서) 협약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수행	-
2단계	소관부서	(해당부서) 협약의 초안은 협조전으로 ◇◇◇◇부에 검토 의뢰 ※ 협조전 발송 전 ◇◇◇◇부 담당자에게 유선 등 사전 알림 필수	협약일 기준 최소 1주일 전, 협조전 발송 완료
3단계	주관부서 (◇◇◇◇부)	(◇◇◇◇부) 접수한 협약 초안의 내용을 검토 후 검토 결과를 협조전으로 해당부서에 통보	담당자 협조전 접수 후, 최대 1주일 이내 통보문 발송 완료
4단계	소관부서	(해당부서) 검토 완료된 협약문으로 결재를 득한 후 관계기관과 협약 체결	-
5단계	소관부서	(해당부서) 체결된 협약서를 [ERP-기금지원-후원/MOU관리]에 등록하고, 원본은 ◇◇◇◇부로 제출(협조전 발송)	협약 체결 이후 2주일 이내 ERP 등록 협약서사본첨부 및 원본 제출
6단계	주관부서 (◇◇◇◇부)	(◇◇◇◇부) ERP 등록사항은 ◇◇◇◇부장이 결재(총괄관리 차원)	-
7단계	-	사업 추진 중 협약의 주요 변경사항은 ◇◇◇◇부와 협의	-

그런데 ★★★★★센터는 '♡♡♡' 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통상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 및 검토 된 협약(안)에 기초하여 예산집행 승인을 위한 ◇◇◇◇부장, ◆◆◆◆부장 협조를 받아 소관부서장 전결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특히 업무협약서에 기재 된 사항은 예산을 지원하는 ‘집중 기획형’ 에 한정되어 있고, <◇◇◇콘서트>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 사업관리에도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역시, '16년 <◇◇◇콘서트> ‘집중기획형’ 프로그램 최초 추진 당시 통상절차를 무시하고 소관부서에서 위원장 결재를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일관 된 내부통제 없이 답습 됨에 따라 '23년까지 매년 임의의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 된 것으로 파악된다.

② 재정 지원 방식 부적절

국가의 재정상 지원 방식¹⁷⁾에는 [표4]와 같이 보조, 출연, 출자, 용자가 있는데, ★★★★★센터가 '♡♡♡'에 매년 체결하는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지급한 지원금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업 추진 방식, 예산규모 및 과목(일반수용비) 등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해당 예산을 일반용역비 등으로 전용 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업에 대한 용역계약¹⁸⁾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련의 행정처리에 불합리가 있다.

[표4] 보조, 출연, 출자, 용자의 비교 (정부입법지원센터)

구분	보조	출연	출자	용자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법」 ○ 「지방재정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 「공공기관운영법」 ○ 「정부출연기관법」 ○ 「지방재정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운영법」 ○ 「지방재정법」 ○ 「지방공기업법」 ○ 「지방출자출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 「지방자치법」 ○ 「지방기금법」
법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률에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산편성으로 보조금 교부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법령의 근거나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법률 근거없이 예산 편성으로 가능) ○ 지방자치단체(법령의 근거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기금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필요
집행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와 비슷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행위와 비슷함 ※ 엄격한 통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이 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
집행 잔액 처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정산 필수 ○ 집행잔액, 이자수입은 국고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규정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으로 지원 ○ 일반적으로 사후정산 없음 ○ 집행잔액, 이자수입은 출연기관 자체수입으로 사용 가능 	-	-

17)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참조

18) ' 24.2월 작성 된 사업담당자 사무인계 · 인수서를 살펴보면, 관련 업무협약을 '용역계약' 으로 인식하고 있음

관계부서 의견

☆☆☆☆·☆☆센터는 <◇◇◇콘서트> 사업 소관부서가 '20년 ★★★★★★센터로 변경되면서 사업목적은 조정된 후 성과지표를 수정했어야 하나, 당시 ★★★★★★센터가 예술가의집 활성화 업무도 담당하였기에 이전을 답습하여 사업목적과 성과관리가 모순된 상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콘서트> 관련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16년 이래 답습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최근 인지하였으나 수 년간 실효적으로 지속된 협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23.11월 주간회의 공론화 안건 상정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 진행 및 '24.3월 '♡♡♡' 측에 협약 중단 의사 전달 등 원만하게 불합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에 관한 업무 주관부서인 ☆☆☆·☆☆센터는 후원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정행위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향후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
- ② 대외 업무협약서(MOU)체결 총괄관리 주관부서인 ◇◇◇◇팀은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 및 내용, 체결 절차, 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불비한 규정을 제정하시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권 고 · 개 선 요 구

제 목 [◆◆◆콘서트] '24년 사업추진 근거 부존재

소 관 부 서 ☆☆☆☆ · ☆☆센터, ○○○○양성팀

조 치 부 서 ○○○○양성팀, ◆◆◆◆팀

내 용

1. 업무개요

'24.2.1. 조직개편에 따라 ○○○○양성팀(舊 ●●●●양성부)은 ‘예술가의집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고, '24.3.8. ‘'24년 예술가의집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가의집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지감사 시점인 '24.5월 현재, ○○○○양성팀은 「예술가의집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4.6월까지의 대관 및 사용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 가운데 <◆◆◆콘서트>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표5]와 같이 총 54건 확인된다.

[표5] '24년 <◆◆◆콘서트> 관련 예술가의집 대관 및 사용 일정

일 자	대관시간	대관공간	사용 건수
1.15 / 29	13:00-20:00	다목적홀, 세미나1,2실	6
2.5 / 19 / 26	13:00-20:00	다목적홀, 세미나1,2실	9
3.4 / 11 / 18 / 25	13:00-20:00	다목적홀, 세미나1,2실	12
4.8 / 15 / 22 / 29	13:00-20:00	다목적홀, 세미나1,2실	12
5.13 / 20 / 27	13:00-20:00	다목적홀, 세미나1,2실	9
6.3 / 10	13:00-20:00	다목적홀, 세미나1,2실	6
합 계			54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특정업무에 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 시 판단 관련 규정 불완전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르면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비중이 가장 큰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고, 신규 사업 또는 분장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그 업무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정업무에 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24.2.1.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이전까지 <◆◆◆콘서트> 사업은 [표6]과 같이 ★★★★★센터(現 ☆☆☆☆·☆☆센터)가 소관부서¹⁹⁾로서 예술가의집 대관·운영을 담당하는 ●●●●양성부(現 ○○○○양성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는데, ' 24.2.1. 이후 <◆◆◆콘서트> 관련부서의 사업 업무담당자는 [표7]과 같이 조정되었다.

[표6] <◆◆◆콘서트> 프로그램 유형별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추진근거
기획대관형	“♡♡♡♡♡♡” 주관 클래식 음악 공연 ※ 통상 월요일 저녁 8시 예술가의집에서 진행	후원활성화 ※예술나무운동 연계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 계획” 등
집중기획형	기획대관형 프로그램의 일부 회차에 대하여 공연내용을 예술위와 “♡♡♡♡♡♡” 가 협의 - 예술위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용 - 예술위가 “♡♡♡♡♡♡” 에 사업비 일부 지원 (MOU체결)	후원활성화 ※예술나무운동 연계	“예술가의집 공동기획 프로그램 ◆◆◆콘서트 운영계획” 등
행사유치형	“♡♡♡♡♡♡” 가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음악축제(줄라이페스티벌 ²⁰⁾) 예술가의집 유치 - 예술위가 장소 대관 등을 후원	시설이용 활성화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 계획” 등

[표7] ' 24.2.1.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콘서트> 관련부서 인사변경 사항

구분	☆☆☆☆·☆☆센터 (舊 ★★★★★센터)		○○○○양성팀 (舊 ●●●●양성부)	
	부서장	담당자	부서장	담당자
' 24.2.1. 이전	(공석) ²¹⁾	CCC	AAA	DDD
' 24.2.1. 이후	AAA	CCC	BBB	DDD

19) ' 23.3.27. 조직개편으로 예술가의집 운영 업무 소관부서가 ‘★★★★★센터’ 에서 ‘●●●●양성부’ 로 변경 되었는데, <◆◆◆콘서트> 프로그램이 예술후원 활성화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센터’ 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겠다고

‘●●●●양성부’ 에 통보 함 / (★★★★★센터-001361(2023.04.11.) “예술가의집 기획프로그램 주관 부서 변경 보고”
20) “♡♡♡♡♡♡” 가 기획하는 여름 축제로, 매해 작곡가를 선정하여 7월 한달간 매일 새로운 연주가 이어지는 클래식음악 축제

이와 관련하여 작성 된 사무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성팀장은 ●●●●양성부장으로부터 “<◆◆◆콘서트>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와의 협의를 필요” 하다는 내용을 [표8]과 같이, ☆☆☆☆·☆☆센터장은 <◆◆◆콘서트> 사업 담당자로부터 “'24년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사업진행을 위하여 운영방향 및 예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표9]와 같이, 각각 '24.2.13. 확인하였다.

[표8] 사무 인계·인수서 주요 내용 (●●●●양성부장 → ○○○○양성팀장 / '24.2.13.)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주요 내용
AAA	BBB	EEE FFF	○ <◆◆◆콘서트> 관련 ★★★★★★센터와 협의 필요

[표9] 사무 인계·인수서 주요 내용 (☆☆☆☆·☆☆센터 담당자 → ☆☆☆☆·☆☆센터장 / '24.2.13.)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주요 내용
CCC	(공석) ²²⁾	AAA	○ ♥♥♥♥♥♥ 협력 - (운영방향점검) <◆◆◆콘서트>는 '24.1.15. 신년 콘서트를 시작으로 추진, 전년과 동일하게 10회 공연 중 2회 예우콘서트 기획 / 8회 신진(영재)-실험 연주자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할지 또는 전 회차의 일부 좌석을 활용하여 후원제 예우프로그램과 연계 할지 내부 협의 필요 - (예산과목변경) '23년까지 사용했던 예술가의집 예산에서 후원센터 일반수용비 및 사업추진비로 변경하여 운영

이후 '24.2.26. ☆☆☆☆·☆☆센터장은 “예술나무운동의 사업기조 변경으로 더 이상 예술후원 활성화 예산으로 <◆◆◆콘서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양성팀장에게 전달하고, '24.3.8. ○○○○양성팀장 및 '♥♥♥' 관계자 등과의 미팅자리에서 향후 <◆◆◆콘서트> 사업은 예술가의집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소관부서인 ○○○○양성팀과 '♥♥♥' 이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구두로 통보 하였다.

21) 전임자 퇴사('24.1.4.) 이후 '24.2.1. 인사이동 전까지 후임자 배치 없음

22) 실무자 장기휴가('24.2.22. ~ '24.3.21.) 및 휴직('24.3.22.~) 이후 후임자 배치 없음

그러나 당시에는 ' 24.1월부터 이미 ★★★★★★센터 소관으로 <◆◆◆콘서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근거 마련 및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직제개편에 따라 ☆☆☆☆·☆☆센터와 ○○○○양성팀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나 결정없이 이를 실기하여 본 감사 이전까지 방치함으로써 사업관리의 공백이 발생되었다. 그 결과 ' 24.5월 현재, 예술가의집에서는 <◆◆◆콘서트> 사업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특정업무에 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현 규정을 따르면, 소관부서 간에 자체적으로 업무 비중을 겨루거나, 업무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협의하는 과정이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시기를 실기하여 기관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장업무 조정의 최종결정을 위원장이 하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

나. ' 24년 <◆◆◆콘서트> 관련 예술가의집 무료대관 근거 부존재

「예술가의집 운영규정」에는 위원회 행사 및 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술가의집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양성팀이 수립한 “' 24년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계획” 등에 <◆◆◆콘서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공동주관 또는 위원장 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관련 예술가의집 무료대관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 24년 <◆◆◆콘서트> 사업과 관련하여 ○○○○양성팀이 ' 24.5월 현재까지 승인한 54건의 대관 건에 대하여 대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은 불합리하다.

관계부서 의견

☆☆☆☆·☆☆센터는 <◆◆◆콘서트> 사업의 예산집행, 프로그램 관리, 공간운영 등의 업무가 두 개 부서에 걸쳐 배정되어 있는 복잡한 추진·운영구조로 말미암아 조직개편 이후 ○○○○양성팀과 예산집행 등과 관련한 논의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중단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사업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조직개편 후 ☆☆☆·☆☆센터는 <◆◆◆콘서트> 사업에 후원활성화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확정하였으므로 후속조치는 예술가의집 대관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인 ○○○○양성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성팀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소관업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예술가의집 시설 운영 주관부서로서 “'24년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4.1월부터 '24.6월까지 <◆◆◆콘서트> 사업추진 및 무료대관 근거 등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예술가의 집 시설 운영 주관부서인 ○○○○양성팀은 “'24년 예술가의집 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하시어 현재 누락되어 있는 '24년 <◆◆◆콘서트>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 등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권고]
- ② 직제관리 주관부서인 ◆◆◆◆팀은 특정업무에 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기관의 업무 효율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직제관리 주관부서가 조정하도록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라운지클럽] '23년 예산편성 및 집행 불합리

소 관 부 서 ☆☆☆☆ · ☆☆센터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개요

'23년 ●●●●양성부는 예술가의집 개보수를 통한 신규 공간 활용 방안 및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 역할 강화 방안 필요에 따라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라운지클럽> 프로그램을 [표10]과 같이 신규사업으로서 추진·운영하였다.

[표10] '23년 <○○○라운지클럽> 추진 및 운영 개요

사업명	○○○라운지클럽
추진배경·목적	(라운지 활용) 예술가의집 개보수를 통한 신규 공간 활용 방안 모색 (매개형 공간)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 역할 강화
운영장소	예술가의집 2층 라운지
운영방법	연사와 함께하는 대담형 강의
운영형태	멤버십 형태의 지식라운지 + 네트워킹 프로그램(체험)
운영기간	'23. 8. 30. ~ 11. 29. (격주 수요일 / 8회)
참여인원	회차별 30명 내외

2. 판단기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지출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자체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포하는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예술위 예산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양성부는 신규사업 <○○○라운지클럽> 프로그램을 추진·운영하면서, 당초 [표11]과 같이 “예술인력육성” 사업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의 일부를 주관부서와의 변경협의 없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표11] '23년 예술위 “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및 배정예산

사업명	예술인력육성
사업목적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현장 전문인력 육성(재교육) 및 일자리 지원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공연법 제1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 의무)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의 13(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배정예산	32,629백만원

가. 예산 전용 없이 집행

●●●●양성부는 “예술인력육성”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약 1,500만원을 [표12]와 같이 <○○○라운지클럽> 추진을 목적으로 예산 전용 없이 지출하였다.

[표12] '23년 <○○○라운지클럽> 관련 ●●●●양성부 일반수용비 및 사업추진비 지출 내역

예산편성		금액
○○○라운지클럽	홍보	2,200,000
	케이터링	2,992,000
	장비임차	2,990,000
	사진촬영	2,640,000
	영상제작	1,650,000
	라운지 소모품 구매	500,000
	진행용 소모품 구매	200,000
	연사 저서 구매 (증정용)	1,500,000
	사전회의 등	600,000
합계		15,272,000

나. 용역사업 계약체결 전 사전협상으로 사업과 무관한 과업내용 추가

●●●●양성부는 “예술인력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력 교육에 대한 단계별, 경로별 체계화 및 제도화를 통해 예비인력 및 종사자들의 경력개발 비전 제공’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 3개 분야(기획, 행정, 경영) 예비·현장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비 1억 5천만원 규모의 “'23년 ○○○문화예술전문가코스 현장 교육 위탁 운영” 용역사업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양성부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대상자로 선정 된 용역업체와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표13]과 같이 기존의 과업을 축소하고 사업과 무관한 가칭 <청년 문화예술학교²³⁾> 과업을 추가, 예산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행사명을 <○○○라운지클럽>으로 변경하여 관련 된 업무를 [표14]와 같이 용역업체가 수행하게함으로써 사업비 3천만원²⁴⁾ 가량을 기존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23) 과업 수행과정에서 행사명이 “○○○라운지클럽” 으로 변경 됨

24) 기존 과업과 함께 집행 된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은 별개로 특정할 수 없어 제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13] '23년 <○○○문화예술전문가코스 현장 교육 운영> 용역 사전협상 내용

구분	기존 제안내용	조정안
과업 범위	<○○○문화예술전문가코스>현장 교육 운영 ○ 교육목표 : 문화예술(기획, 행정, 경영)분야의 예비 및 현장 인력의 전문성 향상 ○ 과정개요 : 3개분야 6개과정 총 10회 72시간 ○ 교육형태 : 블렌디드(온+오프) *CoP연계형 ○ 수강인원 : 20명 내외 ○ 교육 결과물 : CoP 생산 결과물 10건 이상	<○○○문화예술전문가코스> + <청년문화예술학교> 결합한 형태로 운영 ○ 기존 제안한 과정 중 일부를 축소하고, 용역비 안에 편성하여 운영 ○ 세부 논의 사항 추가 붙임으로 기재
예산 산출	○ 산출 예산 중 강사료, 퍼실리테이터의 투입예산을 재검토 필요	○ 해당 예산으로 분야별 저명한 전문 강사 및 퍼실리테이터의 섭외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청년문화예술학교의 추가 운영 시 적정예산 재산출

[표14] '23년 <○○○문화예술전문가코스 현장 교육 운영> 용역 중 <○○○라운지클럽> 관련 지출정산 내역

예산편성		금액
○○○라운지클럽	특강 연사	8,000,000
	전담 퍼실리레이터	4,000,000
	원고 작성(작가)	1,400,000
	홍보비용	1,196,312
	네트워킹 프로그램 (식사)	3,894,000
	현수막 / 배너	150,000
	명찰	82,000
	행사물품 대여 및 구매	745,000
	홍보자료 기획, 개발, 디자인	1,430,000
	기념품 포장	179,950
	○○○라운지클럽 직접 경비	3,380,292
	기타운영비	190,038
직접경비(A)	소계	24,647,592
일반관리비(B)	(A×6%)	1,478,856
이윤(C)	((A+B)×10%)	2,612,645
부가세(D)	((A+B+C)×10%)	2,873,909
합계		31,613,001

관계자 의견 및 판단

前 ●●●●양성부장(現 ☆☆☆☆·☆☆센터장)은 지출 계획을 상당 정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3년 예술인력육성 사업 예산을 <○○○라운지클럽>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전용을 해야 할 만큼의 상당 정도의 변경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①<○○○라운지클럽> 사업의 수강생 및 강연내용 등이 예술인력육성 사업에서 추진되는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②○○○문화예술전문가코스 용역 과업 방식인 ‘특정강사가 예비 및 입문자 대상으로 교육’ 과 유사하게 <○○○라운지클럽> 사업관련 과업이 추가되었기에 협상대상자도 무리없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라운지클럽> 사업 추진의 당초 목적이 ‘공간 활용’에 있었으며, ●●●●양성부에서 작성한 ‘'23년 ○○○라운지클럽 운영 결과보고²⁵⁾’를 살펴봐도 “예술위의 역할(지원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사업의 추진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술인력육성 사업의 목적인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현장 전문인력 육성(재교육) 및 일자리 지원”과는 사업의 대상, 취지 등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후적으로 사업의 형태적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는 협상대상자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고 사전협상 과정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급조하여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형성, 사고발생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5) ●●●●양성부-6813(2023.12.20.) “2023년 ○○○ 라운지클럽 운영 결과 보고”

다만, 이번 사안과 같이 기관의 필요로 신규 추진되는 자체사업의 경우 예산을 임의로 자체 전용할 수 없는 사업 소관부서로 업무를 일임해 버리면 재원마련을 위한 무리한 행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로서 재정 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을 보증하는 추진·관리체계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집행실적 관리 주관부서인 ◇◇◇◇팀으로 하여금 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시에 지도·점검·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라운지클럽] '24년 사업 추진·운영 비합리

소 관 부 서 ☆☆☆☆·☆☆센터

조 치 부 서 ☆☆☆☆·☆☆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24.2.1. 조직개편에 따라 ☆☆☆☆·☆☆센터는, '23년 예술가의집 운영 소관부서로서 ●●●●양성부가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매개형 공간’으로서 예술가의집의 역할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운영했던 회원제 대담형 강의 프로그램인 <○○○라운지클럽> 사업을 이관받았다.

이에 ☆☆☆☆·☆☆센터는 '24.2.7. '23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더레이터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회원 선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4년 <○○○라운지클럽>의 모더레이터로 연속 위촉하였다.

또한 ☆☆☆☆·☆☆센터는 '24.3.5.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잠재 후원자 발굴’을 목적으로 <○○○라운지클럽>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24.3.11. 이를 운영할 용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후 '24.3.13. “'24년 ○○○라운지클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운영하였다.

[표15] ('23년 ~ '24년) <○○○라운지클럽> 사업 추진 및 운영 개요

구분	'23년	'24년
주관부서	●●●●양성부	☆☆☆☆·☆☆센터
추진 배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지 활용) 예술가의집 개보수를 통한 신규 공간 활용 방안 모색 ○ (매개형 공간)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지 활용) 예술가의집 개보수를 통한 신규 공간 활용 방안 모색 ○ (매개형 공간)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 역할 강화 ○ (잠재 후원자 발굴) 예술가와의 대담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 인식을 통한 잠재 후원자 발굴
운영시간	○ '23. 8. 30. ~ 11. 29. (격주 수요일 / 8회)	○ '24. 4. 9. ~ 6. 25. (매주 화요일 / 8회)
참여인원	○ 회차별 30명 ²⁶⁾ 내외	○ 40명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성과관리 체계 보완 필요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²⁷⁾을 말한다.

☆☆☆☆·☆☆센터는 ‘잠재 후원자 발굴’을 사업목적으로 “'24년 ○○○라운지 클럽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예술후원 연계 강화’, ‘모집 대상 확대 및 타겟팅’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과정을 통해 <○○○라운지클럽> 사업의 ‘잠재 후원자 발굴’과 관련한 실행방안 및 구체적 목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6) '23년 멤버십 회원 참여율 저조를 예방하기 위해 ONE DAY(1일권/20,000원) 운영, '24년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폐지

27)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항

① 사업목적 변경을 위한 전년도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 부실

사업목적 변경을 위해서는 이전 사업 실적에서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진한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사후관리와 함께 추진실적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센터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라운지클럽> 사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24년 사업목적을 ‘잠재 후원자 발굴’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예술후원 연계 강화’, ‘모집 대상 확대 및 타케팅’ 등의 성과 제고를 위한 시행계획도 불분명하게 사업을 추진·운영하였다.

②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부재

기관의 성과관리는 개별 사업의 효과 및 추진실적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기준을 정하고, 해당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센터는 '24년 <○○○라운지클럽>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역시 검토한 바 없다. 그 결과, <○○○라운지클럽> 사업의 효과성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불가하므로 성과관리에 비합리가 있다.

나. 모더레이터 활용방식 비합리

모더레이터란 ‘회의나 토론석상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사람²⁸⁾’을 이르는 말로

28) 네이버 지식백과

☆☆☆☆·☆☆센터는 대담형 강의 프로그램 <○○○○라운지클럽>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모더레이터 1인을 위촉하고 회당 활동에 따른 소정의 사례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에서 지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는 모더레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프로그램 진행 외에 ‘연사 섭외’, ‘회원 네트워킹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라운지클럽>은 회원 모집 안내 이후 접수된 신청자 중에 제한된 인원을 선정하여 추진되는데, ☆☆☆·☆☆센터는 회원 선정과정에서 [표16]과 같이 모더레이터에게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표16] ('23년 ~ '24년) <○○○○라운지클럽> 회원 모집 및 선정 개요

구분	'23년	'24년
주관부서	●●●●양성부	☆☆☆☆·☆☆센터
신청인원	66명	54명
선정기준	① 신청동기 충실도 ② 다양한 직업군 (학생 제외)	① 자기소개 및 신청 동기 충실성 ② 다양한 직업군 ③ 1기 회원 우대
선정절차	담당 부서장 1차 선정 → 위원장보고	담당자 사전 확인(기재 누락 1차 점검) → 모더레이터 선정 → 위원장 최종 확정
선정인원	36명	38명(2명 취소)

예술위의 조직과 업무는 『정부조직법』, 「사무처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보고 절차와 체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철저하게 조직 내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인사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업무가 추진 될 경우, 실제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책임관리자가 아니라 실무자에게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등 행정절차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유의해야 한다.

관계부서 의견

☆☆☆☆·☆☆센터는 '24년 <○○○라운지클럽> 사업이 경영진의 판단으로 '23년과 달리 '잠재 후원자 발굴'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없었고, 이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음은 인정하였다. 다만, '24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들의 후원약정을 지속 관리하였고, 이에 18명의 참여자가 예술나무에 3,120,000원을 후원을 약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므로, 차후 사업 추진시 금번의 실적을 토대로 목표 수립 및 사업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더레이터의 경우 양질의 진행을 위한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회원 선정 업무를 일부 부여하였으나,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치할 사항 ☆☆☆·☆☆센터는

- ① <○○○라운지클럽> 사업 추진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을 적절하게 수립함으로써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시고,
- ② 모더레이터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 및 재설정하여, 그에 맞는 사업체계 또는 고용형태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개선]